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

(제5조제5항, 제8조제5항, 제13조제2항 관련)

1. 형식에 관한 기호

구 분	내 용	형식기호
1. 기자재	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기기부호	
2. 삭제		
3. 삭제		
4. 삭제		
5. 삭제		
6. 주파수	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	1) " / "의 상란에 최저주파수, 하란에 최고주파수를 MHz단위로 하여 표시한다. 다만, 송신 및 수신 주파수 범위가 다를 때에는 먼저 송신주파수를 기입하고 다음에 수신주파수 순으로 "최저주파수/최고주파수 T, 최저주파수/최고주파수 R"로 표시한다.
		2) 단일주파수 또는 2개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에 있어서는 그 주파수의 각 첫째숫자로 구성되는 숫자를 표시 한다.
7. 송신·수신의 구별	송신장치의 경우에는 T, 수신장치의 경우에는 R로 표시한다.	
8. 전력	신청전력은 W를 단위로 한 숫자(신청전력이 1,000W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KW를 단위로 한 숫자로 표시한다. 그 숫자 표시에 있어서는 그 숫자 앞에 올 기호가 숫자인 경우에는 앞의 숫자와의 사이에 "—"을 삽입한다. 이 경우에 구비전파의 전력이 서로 상이한 2개 이상으로 되는 때에는 순차로 낮은 주파수로부터 높은 주파수 순의 “, ” 로, 전력이 가변일 경우에는 “최소전력/최대전력” 으로 표시하여 구분한다.	
9. 전파형식	전파법시행령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한다.	
10. 채널	채널수는 그 수를 표시하고 그 숫자앞에 기호로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간에 “—”을 삽입한다.	
<비 고> 1. 삭제 2. 별표1 해당기자재와 주파수 사이에는 “—”을 삽입한다. 3. 대상기자재가 2이상인 복합기기는 첫 번째 기자재에 대하여 모든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, 두 번째 이후 기자재부터는 대상기자재 앞에 “+”를 삽입하고 해당항목을 기재한다. (대상기자재 기기부호가 동일한 경우, 두 번째 이후 기자재부터는 동일한 기기부호를 생략할 수 있다.) 4. 삭제		

2.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

구 분 \ 항 목	기 자 재	주 파 수	송·수신의구별	전 력	전 파 형 식	채 널
1.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	○					
2.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	○					
3.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	○					
4.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수신장치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○
5.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신장치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○
6.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수신장치의 기기	○	○	○		○	○
7.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	○			○		
8. 네비텍스수신기	○					
9.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	○	○		○		
10.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	○	○	○	○	○	○
11.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	○	○	○	○	○	○
12.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	○	○	○	○	○	○
13. 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(해상이동업무의 기기)	○	○	○	○	○	○
14. 경보자동전화장치	○					
15.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	○					
16.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	○	○		○	○	
17. 무선방위 측정기	○					
18. 라디오부이의 기기	○	○		○	○	
19.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
20. 의무항공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	○	○	○
21.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○
22.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
23.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○
24.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○

구 분 항 목	기 자 재	주 파 수	송·수신의구별	전 력	전 파 형 식	채 널
(육상이동업무의 기기)						
25. 기상원조용 무선설비	○	○		○	○	
26.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(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)	○	○	○	○	○	○
27.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(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)	○	○	○	○	○	
28.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	○
29.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○
30.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○
31.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	○	○	○	○	○	
32.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	○	○	○	○	○	
33.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	○	○	○	○	○	○
34.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(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)	○	○	○	○	○	
35.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(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)	○	○	○	○	○	
36.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(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)	○	○	○	○	○	
37.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(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)	○	○	○	○	○	
38. 협대역 사물인터넷(NB-IoT)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
39.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28 GHz) (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)	○	○	○	○	○	
40.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3.5 GHz) (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)	○	○	○	○	○	
41.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별표 1 제4호 아목에 따른 기기) (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)	○	○	○	○	○	
42.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
43.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				
44.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
45.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○

구 분 \ 항 목	기 자 재	주 파 수	송·수신의구별	전 력	전 파 형 식	채 널
46.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
47.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
48.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
49.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				
50.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	○					
51. 자계유도식 무선기기	○					
52.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(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 채널 및 전력 표시 생략)	○					
53. RFID용 무선기기 (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)	○					
54. USN용 무선기기 (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)	○					
55. 코드없는 전화기	○					
56.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	○					
57. 용도미지정 무선기기	○					
58.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	○					
59.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	○					
60.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				
61.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	○					
62.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	○	○		○		
63.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○
64.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	○	○	○	○	○	○
65. 5G 이동통신용(일정한 구역(건물 등)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) 무선설비의 기기(28 GHz 대역) (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) (※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)	○	○	○	○	○	
66. 5G 이동통신용(일정한 구역(건물 등)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) 무선설비의 기기(4.7 GHz 대역) (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) (※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)	○	○	○	○	○	

구 분 \ 항 목	기 자 재	주 파 수	송·수신 의구별	전 력	전 파 형 식	채 널
67. 자율해상무선기기	○	○	○	○	○	
68.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호에 따른 고정위성 업무 지구국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○	○	○	

※ 비고

1. 34. ~ 41., 65., 66.에 해당하는 무선기자재 중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는 형식표시
지정항목 중 기자재 외의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.